

주식회사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2024년 제7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

2024년 2월 20일 오전 9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, 1층 (삼성동, 골든타워) 본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.

주주총수:	10,399명	주식 총수 :	88,534,474주
출석주주수:	94명	출석주식수 :	60,572,475주

의장인 대표이사 이성균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주주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말하고 개최를 선언하다.

이어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보고사항 1 : 감사보고

의장은 내부감사로 하여금 제 7기 감사보고에 관하여 참석주주들에게 설명하게 한 후, 동 보고를 마치다.

보고사항 2 : 영업보고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사로 하여금 제 7기 영업보고에 관하여 참석주주들에게 설명하게 한 후, 동 보고를 마치다.

보고사항 3 :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사로 하여금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에 관하여 참석주주들에게 설명하게 한 후, 동 보고를 마치다.

■ 제 1호 의안 : 제 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제7기(2023.06.01~2023.11.30) 재무제표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한 후, 참석주주들의 심의를 구한 바, 이를 서면의결권 행사 주주를 포함한 참석주주들의 의결요건에 충족한 동의를 받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.

■ 제 2호 의안 : 제 7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사로 하여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14,859,028,294원을 현금배당할 것을 설명하도록 한 후, 참석주주들의 심의를 구한 바, 이를 서면의결권 행사 주주를 포함한 참석주주들의 의결요건에 충족한 동의를 받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.

■ 제 3호 의안 : 제 8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사로 하여금 출석주주에게 제8기 이사보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매월 100만원, 기타비상무이사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설명하도록 한 후, 참석주주들의 심의를 구한 바, 이를 서면의결권 행사 주주를 포함한 참석주주들의 의결요건에 충족한 동의를 받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.

■ 제 4 호 의안 : 제 8 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사로 하여금 출석주주에게 제8기 감사보수와 관련하여 매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설명하도록 한 후, 참석주주들의 심의를 구한 바, 이를 서면의결권 행사 주주를 포함한 참석주주들의 의결요건에 충족한 동의를 받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.

■ 제 5 호 의안 : 정관 변경 승인의 건

의장은 자산관리회사로 하여금 상호 및 정관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 후, 참석주주들의 심의를 구한 바, 이를 서면의결권 행사 주주를 포함한 참석주주들의 의결요건에 충족한 동의를 받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.

조항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 18 조	<p>제 18 조(차입 및 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국토교통부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자산을 투자·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9 조를 따른다.</p>	<p>제 18 조(차입 및 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국토교통부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자산을 투자·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9 조를 따른다.</p> <p>③ <u>회사가 본조에 따라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 33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 33 조 제 1 항 각 호의 외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.</u></p>	<p>다양한 타인자본 조달을 통한 적시성 확보 / 자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</p>
부칙	<p>(신설)</p> 	<p>부 칙 <2024년 2월 20일 개정></p> <p>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4년 [2]월 [20]일 또는 정관 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득한 날(변경인가사항이 아닌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)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</p>

■ 제 6 호 의안 :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(영일대셀프)

의장은 자산관리회사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사업계획(영일대셀프) 변경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한 후, 참석주주들의 심의를 구한 바, 이를 서면의결권 행사 주주를 포함한 참석주주들의 의결요건에 충족한 동의를 받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.

■ 제 7 호 의안 : 제 8 기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의 건

의장은 자산관리회사로 하여금 출석주주에게 제8기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 후, 참석주주들의 심의를 구한 바, 이를 서면의결권 행사 주주를 포함한 참석주주들의 의결요건에 충족한 동의를 받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. (세부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한다)

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의 목적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는 기명 날인하다.

2024 년 2 월 20 일

주식회사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, 4 층(삼성동, 골든타워)
의장, 대표이사 이 성 균 (인)

